

# 강서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월 25일  
행정·재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월 6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.25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교육지원과 김옥단)

### □ 제안이유

강서영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<sup>1)</sup>를 구하고자 함.

---

### 1) ※ 재위탁·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

-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구 분	강서영어센터	
	등 빛 관	등 마 루 관
소재지	강서로62길 48 (등촌동, 등빛도서관 1층)	양천로 542 (등촌동, 가이자동차서비스센터 2층)
면적	272.88㎡	454.73㎡
주요시설	도서관, 상담실, 인터넷실, 강의실(체험창작공간)	도서관, 상담실, 강의실(스토리텔링룸, 어린이존)
직원수	14명(센터장: 1명, 정규직: 8명, 계약직: 5명)	
보유장서	12,092권	6,512권
프로그램	8개 / 483명 유치부단과반(Art&Science, 키즈헤럴드), 초등단과반 등	20개 / 1,350명 유치부종일반(키즈헤럴드스쿨), 유치부단과반, 초등단과반 등
개관일	2012. 06. 28.	2014. 12. 24.
현 운영기관	(주)헤럴드에듀	
운영시간	평일 10:00 ~ 19:00 / 토요일 10:00 ~ 14:00 (휴관일: 매주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)	

나. 위탁사무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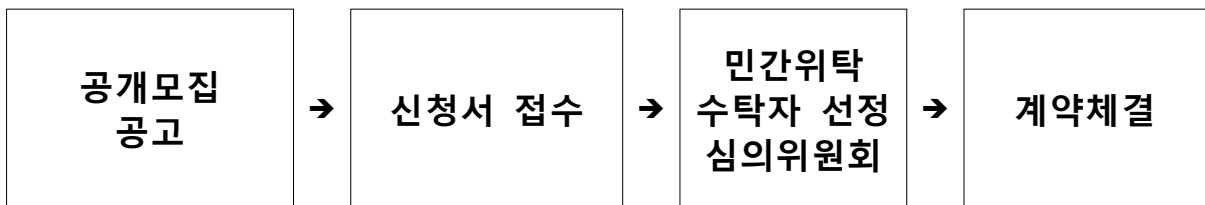
- 강서영어센터 시설 관리·운영
- 영어도서 열람 및 대출 관련 업무, 영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 
영어센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

다. 위탁기간: 3년(2022. 4. 1. ~ 2025. 3. 31.)

라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: 비예산

※ 인건비, 운영비 등: 수익금으로 자체 조달하여 예산 미지원

마. 수탁자 선정방식



바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전문성 있는 기관에 영어센터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
- 영어교육에 대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구민 만족도 제고

사. 위탁운영체 신청 자격: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나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, 제25조, 부칙 제3조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- 본 동의안은 강서영어센터(등빛관·등마루관)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<sup>2)</sup>됨에 따라 영어센터 운영에 대한 재위탁<sup>3)</sup>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- 강서영어센터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주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수준 높은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영어강좌 프로그램 및 영어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식정보문화센터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.<sup>4)</sup>

### 2) ※ 강서영어센터 위탁 연혁

분관명	개관일	위탁기간	위탁법인	비고
등빛관	2012.06.28.	개관일~2014.11.30.	세민학원	인건비(2명) 지원
		2014.12.01.~2016.03.31.	(주)중앙일보 미디어플러스	재정상 문제로 운영 중단
		2016.04.01.~2019.03.31.	(주)헤럴드에듀	신규위탁
		2019.04.01.~2022.03.31.	(주)헤럴드에듀	위탁 연장신청에 따른 재계약
등마루관	2014.12.24.	개관일~2016.03.31.	(주)중앙일보 미디어플러스	재정상 문제로 운영 중단
		2016.04.01.~2019.03.31.	(주)헤럴드에듀	신규위탁
		2019.04.01.~2022.03.31.	(주)헤럴드에듀	위탁 연장신청에 따른 재계약

### 3) ※ 재위탁 및 재계약 정의

- 가. 재위탁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
- 나. 재계약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

### 4) ※ 2021 강서영어센터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: 총점 94점(매우 우수)

- 그리고 강서영어센터의 운영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영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,
-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**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제6조(운영 및 관리)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**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**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2. 노인·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4. 교통,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문화·예술·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6. 노동자복지, 자활,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7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

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

**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**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2.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**제25조(종합성과평가)**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
2.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·반복적인 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**부칙 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**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